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3나590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3나59066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3. 22 선고 2022가단12585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9. 10.

판결선고 2024. 11. 26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3. 22. 선고 2022가단12585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2019. 8. 22.부터 2020. 2. 20.경 사이에 16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을 증여한 해당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고쳐 쓰는 부분】

○ 제5면 제7행 ‘23,600,000원’을 ‘24,600,000원’으로 고친다.

○ 제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계산식을 ‘2019. 8. 22. 기준 178,486,847원[=80,000,000원 + (80,000,000원 × 15% × 140일1) / 365일 + 80,000,000원 × 24% × 233일2) / 365일) + 70,000,000원 + (70,000,000원 × 15% × 321일3) / 365일 + 70,000,000원 × 24% × 52일4) / 365일)], 2020. 2. 20. 기준 196,437,531원[= 80,000,000원 + (80,000,000원 × 15% × 140일/365일 + 80,000,000원 × 24% × 415일5) / 365일) + 70,000,000원 + (70,000,000원 × 15% × 321일/365일 + 70,000,000원 × 24% × 234일6) / 365일)]이 되는 바’로 고친다.

○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5행 ‘사해행위에 해당한다’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피고는 이 사건 각 입금행위에 대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하거나 피고도 C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모든 이체내역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볼 수 있는 비교적 적은 금액은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큰 금액의 송금 내역을 특정하여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, 피고는 C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.』

○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 ‘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’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,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,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)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범준, 판사 진희원, 판사 이형우

별지

- 1) 2018. 8. 15.부터 2019. 1. 1.까지
- 2) 2019. 1. 2.부터 2019. 8. 22.까지
- 3) 2018. 8. 15.부터 2019. 7. 1.까지
- 4) 2019. 7. 2.부터 2019. 8. 22.까지
- 5) 2019. 1. 2.부터 2020. 2. 20.까지
- 6) 2019. 7. 2.부터 2020. 2. 20.까지